

인천지방법원 2024. 10. 15 선고 2024가단8859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9. 24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 6,750,000원 및 2024. 5. 26.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진영

별지